

## 석면해체작업감리인 평가 안내문

「석면안전관리법」 제30조의5,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제2항제3의3 및 환경부고시 제2021-228호에 따라 「석면해체작업감리인 평가」 실시 계획을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.

- 아 래 -

### ① 평가대상

- 「석면안전관리법」 제30조의2에 따라 등록된 감리인으로 법제30조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감리인 (단, 공고일 현재 등록된 날부터 1년 미만인 감리인은 평가대상에서 제외 가능)으로 고시 개정 이후 감리실적을 보유한 감리인 중 해당 기간 평가자로 선정된 자(석면관리 종합정보망 참고)

### ②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

- 「석면해체작업감리인 평가 등에 관한 고시」 (환경부고시 제2021-228호) **별표 3** 참고

### ③ 평가방법 및 절차

- 평가자료 제출 및 확인 : 석면관리 종합정보망에 평가를 위한 자료 제출 및 입력정보 확인
- 석면관리 종합정보망 내 감리인 등록 서류검토 및 석면해체작업감리 완료보고서 등을 사전평가하고
- 감리인 사무실·석면해체작업 현장을 방문하여 등록 현황 확인 및 감리원 전문성 확인을 위한 인터뷰, 시설·장비 현황 등을 평가

### ④ 평가기관

- 「석면안전관리법」 시행령 제51조제2항제3의3호에 따른 **한국환경공단**

### ⑤ 평가일정

- 2022년 8월 9일 ~ 2022년 11월 30일  
※ 평가기관의 평가 일정에 따라 변동 가능

### ⑥ 기타 사항

- 그 외 평가 관련 세부 안내 사항은 석면관리 종합정보망(<http://www.asbestos.me.go.kr>)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2022년 7월 25일

한국환경공단 이사장

관인생략